

FTA 최근 동향



01 관세청 주요 이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FTA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28일 서울본부 세관에서 「농산물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농어민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증빙을 간소화 하기 위해 농산물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자체 발행 인증 증빙서류에 관세청이 확인한 원산지와 품목 분류(HS)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농산물의 FTA 수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증빙 자료로서의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식에서 김낙희 관세청장은 “두 기관이 협력해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수출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농업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중 FTA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국내농산물의 수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면 전정부적인 모범·선도시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농산물의 경우 FTA 활용에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내 농산물 FTA 활용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적극 노력해 농산물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해 국가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통식품, 유기농식품 등의 농산물 관련 인증서도 ‘원산지증명 서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세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FTA 원산지협력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은 삼성전자와 11월 20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자유무역 협정(이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FTA집행기관인 관세청과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는,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수출 과정까지 원산지정보 유통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수출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으로 부터 공급받는 부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FTA 전문지식 부족으로 원산지정보 유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해 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관세청의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도입,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상대국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관리자 및 현장방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FTA 아카데미(Academy) 특별과정’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보급 및 사용 교육 등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관세청은 FTA 혜택을 수출기업과 협력기업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워크숍 개최

관세청은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관세국경관리 연수원에서 청장·차장을 포함한 47개 세관장 등 관세청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석해 ‘중기 미래전략 및 15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행정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한-중 FTA’ 등 환경변화 요인들과 ‘해외직구’, ‘유해물품 반입 차단’ 등 국민관심이 높은 사안들을 종합검토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에 대비 및 대중(對中) 교역을 확대를 위해 통관체제

개편과 FTA 및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교역량 확대에 따라 인천권역(인천, 인천공항, 김포, 평택) 세관 통관 물품 급증에 대한 대비책과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통관애로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다루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접구매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방안과 유해물품 및 분산반입을 통한 탈세 등 불법물품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은 한-중 FTA 등 외부환경 변화와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201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2~3년에 걸쳐 추진될 과제들은 중기 미래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을 통한 자유무역협정(FTA) 수출 증대 추진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11월 20일부터 개정·시행했다.

주요개정사항

- FTA 사후신청 시 제출서류인 '수입신고필증' 제출 의무 폐지
-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유효기간 연장 *
선적 후 3일 → 선적 후 근무일 기준 3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 공고로 운영

먼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 하였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선적 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선적일)에 3일까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인정하였다.

더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호주 FTA 발효 대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12월 12일 부터 발효하는 한-호주 FTA를 대비하여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FTA 활용 기업에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개최 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의 한-호주 FTA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 신고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집중 설명 되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한국-호주 FTA 활용을 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및 YES FTA 포털을 통해 기업들의 통관애로를 지원하며, 품목별 양허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큰폭으로 증가

관세청이 FTA 활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창출형 FTA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은 관세청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FTA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FTA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 연결까지 지원하는 사업

관세청은 2014년 10월말 2,399명의 FTA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수출입기업을 일자리연결(Job Matching)을 통해 287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 195명보다 14% 성장한 수치로 올해 일자리 창출목표 227명보다 60명 초과 달성하였다.

취업자별로 살펴보면 특성화고교생이 169명인 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어서 대학생 83명(29%), 경력단절 여성 35명(12%) 순이다.

취업 직종별로는 제조업이 11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법인 등 통관·서비스업이 86명(30%), 무역·도소매업이 58명(20%) 등이다.

「FTA 원산지자료 작성가이드」 발간

관세청은 우리 농산물의 FTA 활용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 편)'를 발간하여,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는 조미 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의 '품목분류(HS) 기준', '주요 원재료명세서' 및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 선택방법'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조미 김(HS 2106.90, 원재료 : 마른 김, 정제염, 동식물성 유지 등)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 마른김(HS 1212.21)은 반드시 완전 생산된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나 그 외 원재료는 역외산 사용 가능(단, 역내부가가치비율 40% 이상)

관세청은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을 크게 완화해 경쟁력 있는 제품의 FTA 활용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 시리즈 2, 발간



관세청은 지난 10월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 원산지증명서편'을 발간·배포하였다. 지난 4월에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1'을 발간한데 이어 수출기업이

FTA별로 원산지 증명 방식이 달라 FTA 활용 수출 시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함이다.

이번 책자는 '13년~'14년 4월까지 수집된 FTA 민원 데이터(22,332건) 중 원산지증명 관련 민원이 8,469건 (3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 빈도가 높은 4개 분야(발급주체, 서식, 유효기간, 유효성)의 질의를 이행 지침 20개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특히, '제3국 무역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제3자 무역에서의 수출자 등 원산지신고 주체', '원산지 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여부', '원산지신고 문안의 적정성' 등 기업들의 FTA활용 실무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들이 포함되었다.

[사례1] 수출업무 대행사 명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A) 기관발급을 규정하고 있는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FTA에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 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업무만 대리가 가능(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7조)

[사례2]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한-EU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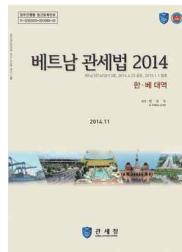
(A) 한-EU FTA에서는 EU 역내국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권한 및 입증책임이 없는 제3국에 소재하는 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음

관세청은 이번 책자도 시리즈 1과 같이, 지역상공 회의소(71개), 자유무역협정 무역종합지원센터(13개), 시도 FTA지원센터(16개), 산업별 협회(11개) 등 전국에

산재한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여 수출입기업들이 FTA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활용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 시리즈 2 : 원산지증명서 편'은 관세청 YES FTA포털(<http://yesita.customs.go.kr>)의 e-book Zone에서 열람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베트남 관세법 2014」 발간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청이 2014년 6월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11월 28일부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베트남 관세법 2014'를 국내외에 배포하였다.

배포대상은 베트남과 거래하는 국내기업 및 관세사, 물류업계 종사자와 베트남에 진출한 3,300여개 우리 기업이며, 파일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내려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은행 평가, 대한민국 관세행정 6년 연속 1위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9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 세계 189개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기업 환경평가에서 대(大) 인구 국가 가운데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프랑스, 3위는 말레이시아, 4위 네덜란드, 5위 영국 순이다.



■ 통관행정부문 평가결과 상위 10개국(大 인구국 기준)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위	대한민국	6위	미국
2위	프랑스	7위	독일
3위	말레이시아	8위	일본
4위	네덜란드	9위	캐나다
5위	영국	10위	스페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10월경 전 세계 국가(올해 189개국)를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Doing Business' 보고서)를 발간한다. 올해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나 소국(小國)을 제외한 인구 1,300만 명 이상 71개 대(大) 인구 국가 중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구규모와 무관한 전체 189개국 순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 평가는 세계은행에서 각국의 물류업체, 관세사, 수출입기업에게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팀의 문서확인 또는 인터뷰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02 우리나라 동향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11월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韓 윤상직 장관, 中 가오후청 부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하였다.

한-중 양국은 이에 앞서 '14년 11월 4일~9일 개최된 한-중 FTA 제14차 공식협상(수석대표 : 韓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中 상무부 가오후청 부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과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등 모든 핵심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하였다.

이로써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한-중 FTA는 2012년 5월 첫 번째 협상을 개시한 이후 30개월만에 협상 실질 타결에 이르게 되었다. 12월 중 잔여 문안 정리 등 기술적 협의와 법률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호주 FTA 발효, 한-캐나다 FTA 2015년 1월 1일 발효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호주/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었다.

한-호주 FTA는 지난 2009년 5월 협상개시 이후 총 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2월 실질 타결되고 지난 12월 12일 우리나라의 10번째 FTA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호주 FTA 발효일에 호주 시장의 관세가 큰 폭으로 철폐(및 인하)되고 20일 뒤인 2015년 1월 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된다.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협상을 개시하여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3월 타결되었으며 2015년 1월 1일 발효된다.

한-호주와 한-캐나다 FTA는 10년 내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400억불 수준의

교역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향후 안정적 자원 확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기대된다. 실제로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이 증가한 것처럼, 한-호주 / 한-캐나다 FTA를 통해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자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호주/캐나다 투자 동향

- (호주) 전체 철광의 72%, 석탄의 44%, 알루미늄광의 77%, 이연광의 20% 수입
- (캐나다) 석유매장량 3위 / 생산량 6위, 천연가스 생산량 4위, 우라늄 생산량 3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한-뉴질랜드 FTA 타결

지난 11월 15일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균형 확보 방안에 대한 양국 입장차로 한때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올해 2월 제5차 공식협상을 재개하여, 지난 10월 제9차 공식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상당한 의견접근 달성 후,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해 FTA 협상 타결 선언에 이르렀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우리나라는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를 모두 완료 하게 되었다.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한-베트남 FTA가 2년 4개월의 협상 끝에 12월 10일 실질 타결됐다.

12월 11일~12일 열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0일 오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베트남 FTA가 타결됨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 등 양국의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분야에 걸쳐 향후 15년간 각각 94.7%와 92.2%의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이번 FTA에 따라 향후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개방률 86.2%) 대비 6%포인트, 200개 품목을 추가 개방하게 된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cc 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분야를 개방한다. 베트남은 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한국은 한-아세안 FTA(개방률 91.7%) 대비 3%포인트, 품목수로는 495개 품목을 추가 개방한다. 새우 수입량에 대해 최대 1만5000톤(1억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가 부여되며, 신선 마늘·생강과 쌀 등은 개방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 개최

한·중·일 FTA 제6차 실무협상이 11월 24일 ~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단은 한국 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은 쑤위안장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 측은 타쇼 사토 외무성 경제부 국장을 대표로 하였다.



한·중·일 FTA는 '12. 11월 한·중·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5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3국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칙” 하에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까지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실질 타결된 한-중 FTA와의 정합성을 유지해 나가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협상 개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6차 협상이 '14년 12월 1일~5일 5일간 인도 그레이트 노이다(Greater Noida)에서 열렸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 참여

우리 측 협상 참석자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규범·협력 분야(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등)의 주요 요소가 논의됐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 ▲ 상품·서비스·투자 협정문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더불어 RCEP 협정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이끌어 내기위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타결 목표로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4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장관급 회의와 한차례 정상 회담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제2회 FTA 활용협력 동반성장 사례발표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7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47개사를 비롯해 동반성장위원회, 학계, 관세법인, 업종별 단체 등 관련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FTA 활용협력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신영, 경신, 석영, 자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6개 기업 및 협회가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공급망의 전략적 자유무역협정 활용 극대화를 위해 FTA 분야의 대, 중, 소기업 동반성장 방안도 논의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직접 찾아가는 자유 무역협정(FTA) 컨설팅을 통해 '미환급 관세 찾아주기', '자유무역협정(FTA) 인력양성을 위한 상생아카데미

교육' 등 실질적으로 협력기업에 애로를 지원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주)신영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으로 협력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원산지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석영, 자흥 등 중소기업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최고 경영자(CEO)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 증대와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제6회 「FTA전문가 포럼」 개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4년 12월 19일(금)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후원으로 제6회 FTA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FTA 정착시대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김낙회 관세청장을 비롯해 한희선 한국관세사회장 등 관련 분야 기관장들과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김기영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FTA에 대한 활용 활성화 방안과 국가 및 기업의 대응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의 과제”라며 “그간의 FTA 활용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FTA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활용방안, 원산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실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FTA가 우리나라 교역증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은 성균관대 오원석 교수의 사회로 강원대학교 김태인 교수, 관세청 김윤식 과장,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선임연구원 등 3명이 FTA 활용과 성과 및 원산지검증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김태인 교수는 ‘FTA 활용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그간의 FTA 활용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관세청 김윤식 과장은 ‘원산지검증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FTA시대 관세행정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진병진 선임연구원은 ‘원산지증명 위험 완화를 위한 원산지확인서 제3자 인증제도 개선방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원산지확인서의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03 해외동향

일본-호주 EPA 승인, 호주시장에서 일본 경쟁력 강화 전망

2014년 7월 타결된 일본-호주 EPA 합의안이 11월 7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승인되었다. 호주는 중국, 미국, 한국에 이은 일본의 4대 교역국으로 그간 일본이 체결한 EPA 파트너 중 최대 교역국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EPA의 주요 성과로 일본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일본 투자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환경 정비, 에너지, 광물자원, 식료품의 안정적 공급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일본-호주 EPA는 일본이 농업대국과 체결한 최초의 EPA로 농산물시장이 대폭 개방하게 되었으며, 이 개방으로 인해 일본 소비자는 호주산 쇠고기와 와인의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호주 EPA 관세 철폐 및 인하율(즉시 철폐 및 10년 내 단계적 철폐)은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93.7%(품목 기준 88.4%), 호주 수입액 기준 99.8%(품목 기준 99.8%)이다.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따른 일본기업의 호주시장 접근 개선, 호주기업의 일본시장 접근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호 FTA에 따른 호주시장 접근 개선사항

구분	내용
광공업품	대부분 즉시 관세 철폐
자동차	일본 완성차 수출액의 약 75%가 즉시 관세 철폐 - 주력 수출품인 1,500~3,0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 즉시 관세 철폐 - 1,000~1,500cc 이하 가솔린 자동차, 2,500cc 초과 디젤차량(오프로드 차), 3.5톤 이상 트럭 및 상용차도 즉시 철폐 - 그 외 차량은 3년 후 철폐

구분	내용
자동차 부품	즉시 또는 3년 이내 관세 철폐 - 엔진부품 및 구동축의 일부, 타이어 등은 즉시 철폐, 머플러 등은 3년후 철폐
철강	즉시 또는 3년 후 관세철폐 - 열연강판은 대부분 즉시 철폐, 냉연강판 및 도금강판은 5년후 철폐
일반 및 전기기계	즉시 철폐, 단 자동차용 전기 부품은 제외
농림수산물	전 품목 즉시 철폐

자료원 : 일본 외무성

■일-호 FTA에 따른 일본시장 접근 개선사항

구분	내용
광공업품	거의 모든 품목을 즉시 혹은 10년간 관세 철폐
농림수산물	쌀, 식용 보리, 설탕, 탈지분아 및 버터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혹은 향후 검토 - 냉동 쇠고기 : 단계적으로 18년간 19.5%까지 삭감 - 냉장 쇠고기 : 단계적으로 15년간 23.5%까지 삭감 ※ 수입량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도입 - 치즈 : 관세할당 등 - 보리 : 사료용에 대해서는 무관세화 - 와인 : 7년간 관세철폐

자료원 : 일본 외무성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외무성, WTA,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

홍콩-아세안 서비스무역 및 투자분야 FTA 협정 추진 현황

2012년 기준 아세안은 홍콩의 4위 서비스 무역 교역 파트너로서, 양자 서비스 무역규모는 약 141억 900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콩의 서비스 무역 전체 규모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아세안 서비스 교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08~2012년 사이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주요 서비스 교역은 교통, 여행 등이다.

FTA 협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무역에서 2012년 기준 수출입, 소·도매 무역을 포함한 주요 서비스무역분야는 GDP 25.4%를 차지했으며 공공행정, 사회 및 개인 서비스분야(16.8%), 금융·보험 서비스 분야(15.9%), 부동산 및 전문·사업 서비스분야(11.5%), 교통·저장·우편 및 택배 서비스분야(6.0%), 정보통신 서비스분야(3.5%)로 나타났다.

투자부문에서는 양 지역 간 FTA 투자협정의 목적은 홍콩과 ASEAN 회원국 간의 투자를 촉진·완화·보호·실현하는 것이다. 양 지역은 홍콩-아세안은 상호 중요한 투자파트너이며 빠른 경제성장의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는 아세안-홍콩 양 측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WTO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협력을 모색 중에 있다. 또한 양국은 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감소, 개선 무역규제조치, 통관절차 및 무역 원활화, 상호 관심분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증진 강화 등 작은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 하고 FTA를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호주-중국 FTA 체결, 아시아 3국의 각축장이 될 호주시장

11월 17일 10년을 넘게 끌어온 호주-중국 FTA가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올해 타결된 한국-호주 FTA와 호주-일본 FTA와 함께 호주에서 아시아 3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 언론과 산업계는 중국과의 FTA 타결을 환영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에 유독 환호하는 분위기이다. 호주 서비스업은 GDP의 80%를 차지하나 수출에서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주는 서비스 수출 확대가 중요한 가운데 최근 중국의 서비스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FTA는 호주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인력 이동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의 저렴한 인력이 대거 몰려오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문구의 명확화를 요구했고 각종 산업별 노조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구성은 농업·자원·제조업 수출·서비스·투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무역 관련분야의 시장 개방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중국은 낙농제품과 육류, 와인, 원예 등에 대하여 완전 또는 단계적 철폐를 수용하였으며, 모(毛)에 대해서는 호주에만 쿼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제조업 부문에서 완전 또는 단계적 철폐 형식으로 개방하였으나, 호주는 기존 관세가 낮은 국가 이므로 호주-중국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규모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 호주-중국 FTA 상품무역관련 양허 내용

중국 개방	<p>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낙농업은 2016~2025년간 6억3000만 달러의 관세 납부액을 절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농제품 : 발효 후 4년부터 11년 내 현재 최대 11%인 수입관세 폐지 - 육류 : 9년간 12~25%인 수입관세 폐지 - 와인 : 4년간 14~20%인 수입 관세 폐지 - 원예(horticulture) : 4년간 최대 30%까지 부과되던 수입관세 폐지 - 모 : 호주에만 쿼터 폐지 - 쌀 · 밀 · 면 · 설탕: 3년 내 시장개방 여부 검토 <p>자원 및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호주로부터의 자원, 에너지, 제조업제품 수입의 92.9%가 수입관세 폐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king coal : 발표와 동시에 3%의 관세 폐지 - Thermal coal : 2년간 6%의 관세 폐지 - 동 · 알루미늄 : 발효 후 1~10%의 수입관세 폐지 - 자동차 엔진 · 다이아몬드 · 플라스틱 : 4년 내 수입관세 폐지 -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 : 4년 내 3~10%인 수입관세 폐지
호주 개방	<p>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세장벽이 낮은 호주는 FTA로 인한 급격한 수입 규모나 관세 변화를 보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제품, 기계, 화학제품등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의류, 주방용품, 신발 등 생활 소모품의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 - 중국산 자동차 및 상용차와 그 부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 철폐됨